

-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역 추가 설치에 관한 청원 -

검 토 보 고

1. 경 과

- 청 원 자 : 박철우(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50, 212동 206호) 외 14,000명
- 소개의원 : 성중기 의원(미래통합당, 강남 제1선거구, 교통위원회)
- 접수일자 : 2020. 4. 1.
- 회부일자 : 2020. 4. 6.

2. 청원요지

- 강남구 청담사거리 일대는 대표적인 도시철도 서비스 소외지역으로 심각한 교통난과 주거환경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위례신사선에 청담사거리역을 추가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이동권을 증진시키고자 함

3. 소개의원 요지

- 해당 지역은 복합 엔터테인먼트 밀집지역이자 글로벌 경제산업의 거점인 동시에 다수의 주거시설이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정노선 중 청담역~학동사거리 사이 구간에 청담사거리역을 추가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

- 서울시장(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위례신사선 정거장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강남구(`20.2.18)에서 정거장 추가 2개소(청담사거리, 삼성병원), 송파구(`19.3.25)에서 정거장 추가 1개소(삼전동)를 검토 요청함
 -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 타당성, 교통수요, 사업비 등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표정속도 유지 등 운영 측면의 타당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해당사업은 위례신도시 광역개통개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신도시 주민의 조속한 추진과 개통을 염원하는 점을 감안하여 협상과 병행하여 신속한 검토를 거쳐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원안가결
 -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3.13)하였으므로, 역사 신설 여부에 대해 협상상대자(도기본-우선협상대상자)간 검토·협의 통해 결정 추진
 - 이 경우, 협상·총사업기간 지연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사업 타당성(경제성·재무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추가 사업비에 대한 관계기관(정부, 지자체, 우선협상대상자)과 긴밀한 협의 필요

5. 검토의견

가. 청원의 개요

- 동 청원은 청담사거리 일대 유동인구 뿐만 아니라 관광객 및 지역주민을 고려해 위례신사선에 청담사거리역을 추가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위례신사선 추진 현황 및 계획

-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삼성동~신사동, 총 연장 14.7km)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도심 접근성 향상과 대규모 개발에 따른 동남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임

- '18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민자적격성 조사 이후 서울시 재정계획심의 및 기재부 민간투자심의 통과하여 '19년 6월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완료¹⁾되었고, '19년 11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5개 컨소시엄에 대한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해 (가칭)강남메트로 주식회사(주간사 GS건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²⁾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상태로 실시협약 체결 이후 실시설계 및 착공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 참고 :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개요

- 구 간 : 위례신도시~삼성역~신사역
- 규 모 : 연장 14.8km,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2018~2027
- 사업방식 : BOT-rs
- 총사업비 : 14,892억원(최초제안)
 - 민자 50% 7,446억원
 - 국비 12% 1,787억원
 - 시비 38% 5,659억원(교통개선분담금 3,100억원 포함)
- 운영기간 : 30년(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다. 검토의견

- 동 청원에서 신설을 요청하는 '청담사거리역'은 도산대로와 삼성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고, 해당 지역 주변에는 한류스타거리, 명품거리, 패션거리 등의 패션특구를 비롯한 상업·공공, 사무, 주거 시설 등이 입주해 있다는 점에서

1) 제28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19.5.30 가결, 본회의 '19.6.17 가결

2) 서울시 보도자료('20.1.31) : 서울시, 위례신사선 우선협상대상자 (가칭)강남메트로(주) 선정

‘청담사거리역’이 신설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강남구 청담동 일대의 교통혼잡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현재 건설계획되고 있는 ‘청담역(108)’과 ‘학동사거리역(109)’의 거리가 약 2km에 이르러 청담사거리 주변의 교통약자가 도시철도를 이용하기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청담사거리역’ 추가를 통해 지역주민의 지하철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할 것임
- 다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서³⁾ “철도노선에 역을 신설하는 경우 타당성 평가결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경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58조⁴⁾에서 총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되는 등의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민자적격성을 재검증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사 추가에 따른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및 비용 부담 및 개통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①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제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산정된 역 시설 건설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 수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 다만, 역사(驛舍)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은 원인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제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4)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0-26호('20.2.10)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58조(민자적격성 재조사)

① 주무관청은 해당 사업추진단계에서 당초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차 제안공고와 비교하여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물량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0분의 20이상 증가하거나, 추정 수요량이 100분의 30이상 감소된 경우 등 사업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65조에 따른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는지의 여부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에 재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